

2023년 운행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서울시는 노후된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더 맑은 서울'을 조성하고자 「운행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15.

서울특별시

I 사업개요

1. 사업명: 2023년 운행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2. 접수기간: 2023.2.15. ~ 12.1. (금) (단, 예산 소진시까지)
3. 사업규모: 2,900대(차종,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으로 지원대수 유동적)
※ 사업 추이에 따라 예산 및 사업대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4. 사업예산: 13,95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5. 사업대상: 사용본거지가 서울시로 등록된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차*,
2009.8.31. 이전 배출기준 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04년도 이전 배출기준 제작 비도로용 지게차, 굴착기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mecar.or.kr>), 콜센터(1833-7435)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6. 신청방법: ①인터넷, ②등기우편(12.1. (금) 소인까지 인정), ③이메일
①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mecar.or.kr>)
② 등기우편: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한국자동차환경협회)
③ 이메일: 1577-7121@aea.or.kr
7. 보조금 청구방법 : 등기우편으로만 청구서 제출
- 등기우편: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한국자동차환경협회)
8. 보조금 청구기간
①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②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차량구매) 보조금: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제작사 사정으로 보조금 청구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산차 출고 자연 확인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

Ⅱ 지원조건 : ① ~ ④호 모두 충족시 신청가능

- (등록기간)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연장된 경우 인정
- (차량상태) 협회에서 지정한 전문폐차업체에 입고 후 협회 직원이 직접 정상가동 확인(정상가동 가능 판정 차량만 보조금 청구 가능)
-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혹은 건설기계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정부지원 DPF 부착 차량도 신청가능)
※ 소유기간에 따른 지원 제한 없음

Ⅲ 보조금 지원금액 및 지원을 등

-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4등급, 5등급 자동차	①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	800	70%	30%	
	②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 조기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기본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1) 기본지원

가.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차량기준가액의 50% 지원
- 그 외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나.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일 경우 :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는 경우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2) 총중량 3.5톤 미만 추가지원

가.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등급, 2등급 자동차를 '**22.11.1. 이후 신규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 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 경유자동차 외 1.2등급 내연기관(휘발유, 가스) → 50%, 무공해차(전기, 수소) → 50%+5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나. 그 외 자동차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등급, 2등급 자동차를 '**22.11.1. 이후 신규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 경유자동차 외 1.2등급 내연기관(휘발유, 가스) → 30%, 무공해차(전기, 수소) → 30%+5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3) 총중량 3.5톤 이상 추가지원

○ 배출가스 1등급, 2등급 대체 자동차가 없는 대형 자동차는 Euro6 이상 차량*을 '**22.11.1. 이후 신규등록**(중고차, 이륜차, 상품용 제외) 시(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범위 이내의 규격** 증가 인정) **신차의 경우 기준가액의 200%, 중고차의 경우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보조금 지원 가능
 - ※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일부 증가(10% 범위 이내)하여도 차명이 유사하고 차종이 동일하거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규모가 작은 차량인 경우 인정
 - ※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의무 운행 기간(2년) 동안 추가 지급 불가(동일 차량에 1회만 지원)
 - ※ 신규로 구매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동일한 원동기 형식의 배기량 환산값 등이 확인되는 경우 폐차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배기량보다 작거나 10% 범위 이내 증가 인정
- ⇒ 환산값 확인 방법 : 환경부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정책<기후대기>[DPF 부착 가능차량(2006.02.01.)첨부자료]

4)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 **5등급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중** 저감장치 부착불가 자동차로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 혹은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보조금에 **화물 특수 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을 추가 지원 (상한액 범위 내).
- ※ **다만, 매연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

2.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 기본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 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임

- 2) 조기폐차 대상 지게차 또는 굴착기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건설기계)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무공해 건설기계 신규등록 시 50만원을 추가지원 가능하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3)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건설기계임을 증빙하는 경우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 4)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후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신규로 구매하거나, 지게차 폐차 후 신규로 굴착기 구매 또는 굴착기 폐차 후 신규로 지게차 구매 시 **추가지원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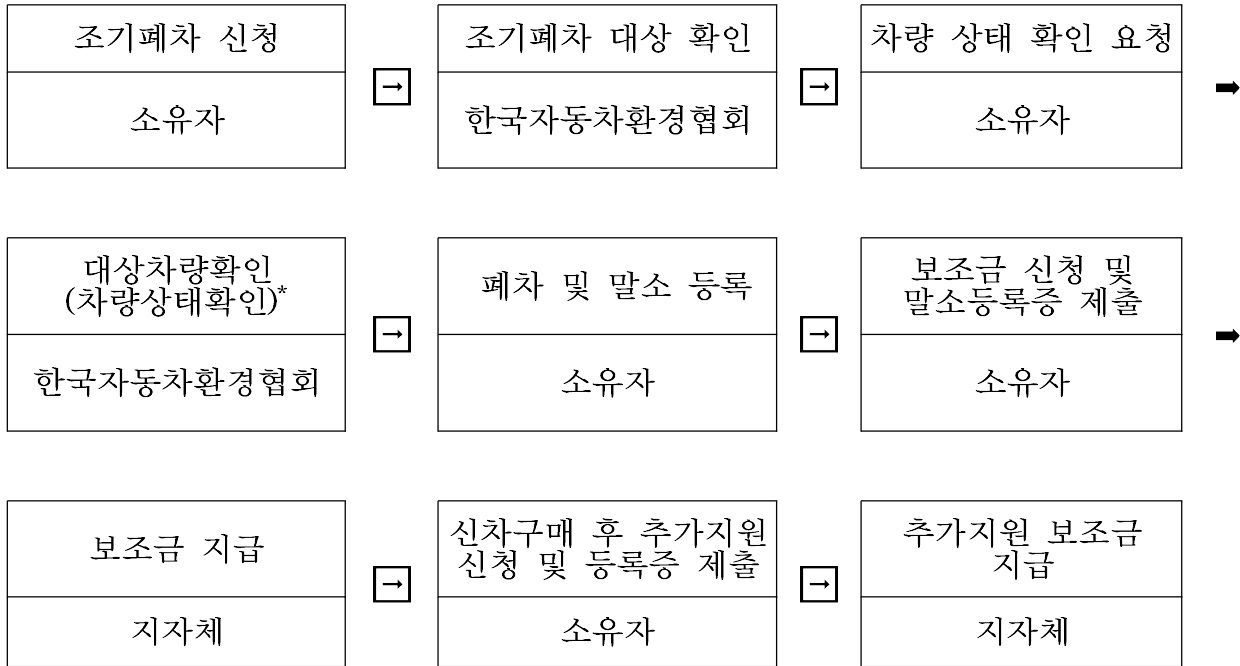
예1)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불가)
 예2) 지게차 폐기→ 굴착기 구매 또는 굴착기 폐기→ 지게차 구매(추가지원 불가)

IV 보조금 산정기준

1. 신청서 접수기준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 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 기준가액표에 '06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5년 차량가액은 '06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 적용산정
2. 2005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5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3.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4. 다만,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5.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6.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 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7.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통보 후 폐차 말소된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에 한해 보조금 지급 (수출, 차령초과 말소 제외)

V 보조금 지원절차

1. 대상자 선정 후 폐차 시 절차



2. 대상자 선정 전 폐차(이후 ‘선평차’) 시 절차(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



VI 지원 서류 및 보조금청구서 제출 안내

1. 신청서 접수[선정 후 폐차 시]

- 접수기간 : 2023.2. ~ 12.1(금) (단,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 중 택1 신청

인터넷	○ 인터넷 신청방법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https://mecar.or.kr) → 로그인→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저공해신청(완료) ○ 구비서류 없음, 크롬(chrome) 권장
등기우편	○ 등기우편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자 외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④ 해당자 :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저소득층, 소상공인 증명서 ○ 접수기간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이메일	○ 이메일 주소 : 1577-7121@aea.or.kr ○ 구비서류(아래 서류를 반드시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선명하게 첨부 송부) ①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자 외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④ 해당자 :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저소득층, 소상공인 증명서 ○ 접수기간내 발송건만 인정

2.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 확인서 신청 대상 및 방법

- (장착불가 차량)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화물·특수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을 추가(상한액 범위내)
- (신청대상)
 - ① 자체 구조변경 등의 경우로 담당부서에서 확인 불가한 차량 소유주
 - ② 장착공간 확인 대상 차량 소유주
- (신청내용)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불가 확인서
- (신청방법) 차량 소유주가 장치 제작사에 전화 신청
- (제출) 사업지원 신청서 제출 시 첨부

3.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 대상 및 방법

- (소상공인) **상한액 내 기초보조금에서 100만원 추가 지원**
- (신청대상)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소유자
- (신청내용)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일 경우)
- (발급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인터넷으로만 발급가능(문의전화 : 국번없이 1357)
- (제출) 사업지원 신청서 제출시 첨부

4. 저소득층 증명서 신청 대상 및 방법

- (저소득층) **상한액 내 기초보조금에서 100만원 추가 지원**
-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신청내용) 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발급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
- (제출) 사업지원 신청서 제출시 첨부

5.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 통보일자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대상안내 여부등 우편 발송 및 문자 알림
- 조기폐차 대상자 : 지원금액 등 명시하여 알림
- 조기폐차 제외자 : 제외사유를 명시하여 알림

6.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및 대상차량 폐차(대상자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통보일 이후 점검하며, 점검결과‘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함
 - ※ **대상차량 확인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며, 비용은 차량소유주 부담**
- 수도권 전문폐차업체 : <https://www.aea.or.kr/support/profCorp.do>
 - ※ **수출, 멸실, 차령초과 말소등록 차량과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7.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소급불가]

○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청구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우편발송

- ①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② 대상차량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③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1부
- ④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1부
- ⑤ 자동차 소유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로 통장 사본 1부

※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 보조금 지원요청 등 청구내용을 반복할 수 없음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유자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8. 조기폐차 추가(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22.11.10이후부터 신차등록 소급]

○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청구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우편발송

- ①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② 신차 자동차등록증 1부(구매계약서 인정 불가)
- ③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1부
- ④ 폐차 및 신차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 보조금 지원요청 등 청구내용을 반복할 수 없음

9. 보조금 지급(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 조기폐차 추가(차량구매) 보조금 청구서 제출 시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익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

10. 유의사항 등 기타

- 보조금을 지급받는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함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 타 시도 전출 및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지원 불가
- 민원방지를 위해 서울시 외 운행 차량은 해당(운행) 지자체가 정한 대상 차량 확인(성능점검) 및 폐차업체에서 진행가능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로 문의
- 보조금 청구시 소유자 통장(계좌)은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여야 함
- 조기폐차 상담문의 : ☎ 1577-7121

VII 문의처

- 접수 및 안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 우편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이 메 일 : 1577-7121@aea.or.kr (반드시 스캔 파일로 전송)
- 서울특별시 : 대기정책과 ☎02-2133-4240 (경유차), 3654(건설기계)
-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3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붙임
1.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 서식]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
 3. [별지 제3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4.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1부.
 5. [별지 제5호 서식] 위임장 1부.
 6. [별지 제6호 서식]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전 신청차량(선평차) 접수 확인증 1부.
 7. [참고 1] 보조금 지급여부(대상, 대상제외) 확인서 1부. 끝.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FAX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⑥등록번호			⑦차대번호	
	⑧ ☐ 자동차 ☐ 건설기계	☐ 연식()년 ☐ 배기량()CC 정원(승합) 명 규격(건설기계 해당) () 중량(화물) ☐ 적재중량()톤 ☐ 총중량()톤			
	⑨차명(건설기계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⑭검사 일자			⑮검사 기관	
	⑯검사 결과	☐ 운행차 배출가스 매연수치()% (운행차배출허용 기준 수치()%)			
선평차(대상자 선정 前 조기폐차 우선 이행 신청) 여부 확인 ☐ 해당 ☐ 미해당		☐ 조기폐차 보조금은 추후 예산확보 후 수령하더라도 폐차 절차를 즉시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에는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수령 할 수 있음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수 수 료
	개인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없 음
	법인	1. 사업지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해당자	1. 수급자(차상위 포함) 증명서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확인번호				
소유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FAX			
신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등록번호 차대번호			
☐ 연식()년 ☐ 배기량()CC				
☐ 차량명(건설기계명) :				
☐ 자동차 정원(승합) : 명 규격(건설기계) ()				
☐ 건설기계 중량(화물) : ☐ 적재중량()톤 ☐ 총중량()톤				
확 인 항 목	동일성 확인 - 부착된 등록번호와 등록증상 일치			
	원동기 - 원동기(시동)작동 여부			
	동력전달장치 (변속기포함) - 변속기의 작동 여부 - 변속 시 동력 전달 여부(전·후진)			
	조향 - 좌·우 작동 여부			
	제동 - 제동 가능 여부			
	유압장치 (건설기계) - 유압유의 상태, 유압유 누출 여부 - 각 작동부의 작동상태 - 각 작동부의 이상소음 여부			
		그외 주요 부품 - 차제 외관 상태 - 완충장치 상태(차량) - 유리창 파손 상태 - 타이어 장착 여부 및 상태 - 등화장치 설치 상태	정상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판정 에 미반영	
첨부물	사진 4매(전·후·좌·우면), ※ 온라인 이용시 사진 5매, 동영상 첨부			
판 정 결 과	정상 가동 여부 ☐ 가 ☐ 부			
	불가 사유	종합의견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등록번호		차대번호	
	☐ 자동차 ☐ 건설기계	☐ 연식()년 ☐ 배기량()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 적재중량()톤 ☐ 총중량()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년 월)		
	주행거리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원 (W)			
폐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폐차 후 신차구매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 연식()년 ☐ 배기량()CC		
		☐ 차량명(건설기계명) :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 적재중량()톤 ☐ 총중량()톤		
	등록일자(예정)	년 월 일 (년 월)		
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 서명 인정됨(단, 공동명의회와 법인은 날인)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 조기폐차 우선 이행 대상 차량은 말소등록증 별도 제출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등기우편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별지 제4호 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FAX	
신규 (중고차 포함) 구매 차량 정보 (지게차 또는 굴착기)	등록번호		차대번호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 연식()년 ☐ 배기량()CC ☐ 용도: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 적재중량()톤 ☐ 총중량()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년 월)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 신차	☐ 중고차	원 (W)	
폐차 관련	등록번호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말소 일자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서명 인정됨(단, 공동명의로 법인은 날인)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등기우편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별지 제5호 서식]

위임장

(공동명의인 경우만 작성)

수임자 (신청자)	주소		
	성명	(인)	
	생년월일		
위임자	주소		
	성명	(인감도장)	
	생년월일		
대상차량정보	구분	자동차번호	자동차명
	폐차대상 (노후경유차)		

상기 위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23년 월 일

위임자 : (인감도장)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 시 서명

★ 조기폐차 추가(차량구매)지급 대상차량도 위 위임장으로 일괄 같음

[별지 제6호 서식]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전 신청차량(선평차) 접수 확인증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등록번호		차대번호																
	전화번호(차주 본인)		FAX																
확인결과	대상 여부	☐ 가 ☐ 부	접수 불가 사유																
상기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전 신청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 일자 : 년 월 일 접수자 : (서명)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인)																			
< 선평차 절차 및 안내(유의)사항 >																			
○ 절차도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① 선평차 신청 소유자 </td> <td style="width: 3%;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td> <td style="width: 33%;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② 선평차 접수 확인증 발급 (보조금 미산정) 소유자 </td> <td style="width: 3%;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td> <td style="width: 33%;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③ 대상차량 확인 (차량상태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④ 선평차 후 말소등록증 제출 소유자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⑤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보조금 산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⑥ 보조금 신청 소유자 </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⑦ 보조금 지급 지자체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⑧ 신차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 소유자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⑨ 추가 보조금 지급 지자체 </td> </tr> </table>					① 선평차 신청 소유자	→	② 선평차 접수 확인증 발급 (보조금 미산정) 소유자	→	③ 대상차량 확인 (차량상태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④ 선평차 후 말소등록증 제출 소유자	→	⑤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보조금 산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⑥ 보조금 신청 소유자	⑦ 보조금 지급 지자체	→	⑧ 신차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 소유자	→	⑨ 추가 보조금 지급 지자체
① 선평차 신청 소유자	→	② 선평차 접수 확인증 발급 (보조금 미산정) 소유자	→	③ 대상차량 확인 (차량상태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④ 선평차 후 말소등록증 제출 소유자	→	⑤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보조금 산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⑥ 보조금 신청 소유자															
⑦ 보조금 지급 지자체	→	⑧ 신차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 소유자	→	⑨ 추가 보조금 지급 지자체															
< 접수통보 이후 절차 > ※ 접수 확인증을 교부받은 소유자는 즉시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을 요청하여 20일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발급 받아야 함 →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폐차를 완료하고 말소등록증을 해당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 차기 대상자 선정 안내 시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보조금 산정금액 안내 예정																			
○ 안내(유의)사항 ※ 상기 접수 확인증이 보조금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차량상태확인(성능검사) 및 말소등록증 등을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참고 바랍니다. - (보조금액) 보조금 산정금액(상한액, 지원율)은 추후 대상자 선정 시 기준으로 산정 (단, 차량 기준가액은 신청일 기준 적용) - (주소 이전 등) 말소등록일까지 소유자 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문의처 :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 02-2133-4240																			

[참고 1]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FAX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등록번호				차대번호		
	☐ 자동차 ☐ 건설기계		차명(건설기계명)		형식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톤 ☐ 총중량()톤
					규격(건설기계)		☐ ()
			☐ 연식()년 ☐ 배기량()CC ☐ 용도()				
확 인 결 과	지급 여부		☐ 가 ☐ 부		저감장치 부착 가능 여부		☐ 부착가능 ☐ 부착불가
	지급불가 사유						
	기본 보조금	기본	원 (₩)				
		저감장치 부착불가	원 (₩)				
	추가 보조금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시)		신차	원 (₩)			
			중고차	원 (₩)			
※ 폐차되는 차량이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총중량 3.5톤 미만 전가·수소차 구매시 추가 보조금에 50만원을 더하여 지원 가능(단, 상한액 범위내)							
귀하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인)							
※ 참고사항 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추가 보조금 청구는 4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조기폐차 우선 이행 대상 차량은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별도 실시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은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일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